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SGS KOREA
Agriculture, Food and Life services

Nov. 15, 2019
Park, Sungeun

WHEN YOU NEED TO BE SURE

SGS

목 차

- I. 자가품질검사 개요
- II.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 III. 자주하는 질문



■ SGS Group

- 1878년 France Rouen에서 Goldstück, Hainzé & Co. 설립
- 1919년 Switzerland Geneva로 이전하면서 SGS(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사명 변경
- 전세계 150여 개국에 약 2,000개 사무소, 시험실 운영하며, 90,0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활동중
- 세계적으로 분석(Testing), 검사(Inspection), 인증(Certification) 산업을 이끄는 역할
- 식품, 농산물, 광물, 석유화학, 자동차, 제약, 소비재물품, 환경 등 13개 사업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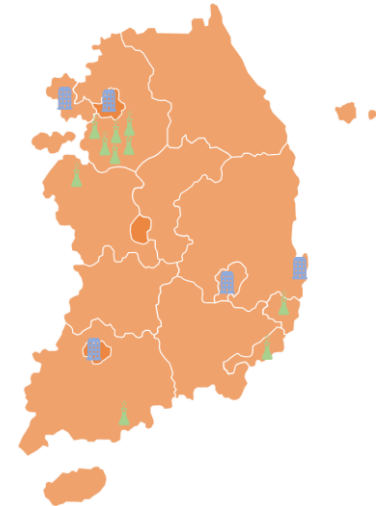


■ SGS Korea

- 1955년 한국 사업시작
- 1994년 ISO 9001 획득
- 2003년 ISO 17025 획득
- 2011년 7개의 독립 법인이 한국SGS로 법인통합
(SGS Korea / SGS Testing Korea / SGS SRS / SGS CTR far East / SGS Tesco / SGS KCQT / SGS S&SC)
- 전국적으로 16개 사무소 및 9개의 시험실 운영하며, 약 1,000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활동중
- 주요 활동 서비스 영역
 - ✓ 시험 및 분석(Testing & Analysis)
 - ✓ 2자 및 3자 감사(2nd & 3rd Party Audit)
 - ✓ 교육(Training)
 - ✓ 인증(Certification)
 - ✓ 검사 및 검증(Inspection & Verification)
 - ✓ 기술 자문(Technical Consulting)



INSPECTION
TESTING
VERIFICATION
CERTIFICATION
TRAINING
CONSULTANCY
OUTSOURCING



FROM FARM TO TABLE



INTEGRATED SOLUTIONS ACROSS THE VALUE CHAIN

- Inspection services
- Analytical services
- Audit & Certification services
- Training services
- Advisory services



I. 자가품질검사 개요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란?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제품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민보건을 보장하는 검사

Who?

- ✓ 식품제조·가공업자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 용기·포장류제조업자
- ✓ 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

What?

- ✓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
- ✓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포함
- ✓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

How?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I. 자가품질검사 개요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는 언제 하는가?

When?

- ✓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기준
 - 수입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과 같은 경우는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 기준
- ✓ 영업자 및 식품유형에 따라 주기가 다름
 - 식품제조 · 가공업
 - 식품유형에 따라 다름 : 3개월 ~ 1개월 마다 1회 이상
 -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 · 포장 : 6개월 마다 1회 이상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9개월 마다 1회 이상
 - 식품유형에 따라 해당이 없는 경우도 있음
 - 식품첨가물 : 6개월 마다 1회 이상
 - 기구 등 살균소독제 :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 상기 외의 식품첨가물 :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 기구 또는 용기 : 6 개월 마다 1회 이상



I. 자가품질검사 개요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는 언제 하는가?

When?

➢ 식품제조 · 가공업

구분	대상 제품	검사주기
식품제조 · 가공업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만 해당),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 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 · 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	3개월 / 1회 이상
	식품제조 · 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 · 포장	6개월 / 1회 이상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 · 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 · 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비가열음료는 제외),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	2개월 / 1회 이상
	그 이외의 식품	1개월 / 1회 이상

I. 자가품질검사 개요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는 언제 하는가?

When?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구분	대상 제품	검사주기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 식용유만 해당),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 · 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 · 홍삼 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 1회 이상
	그 이외의 식품	해당 없음

I. 자가품질검사 개요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는 어디서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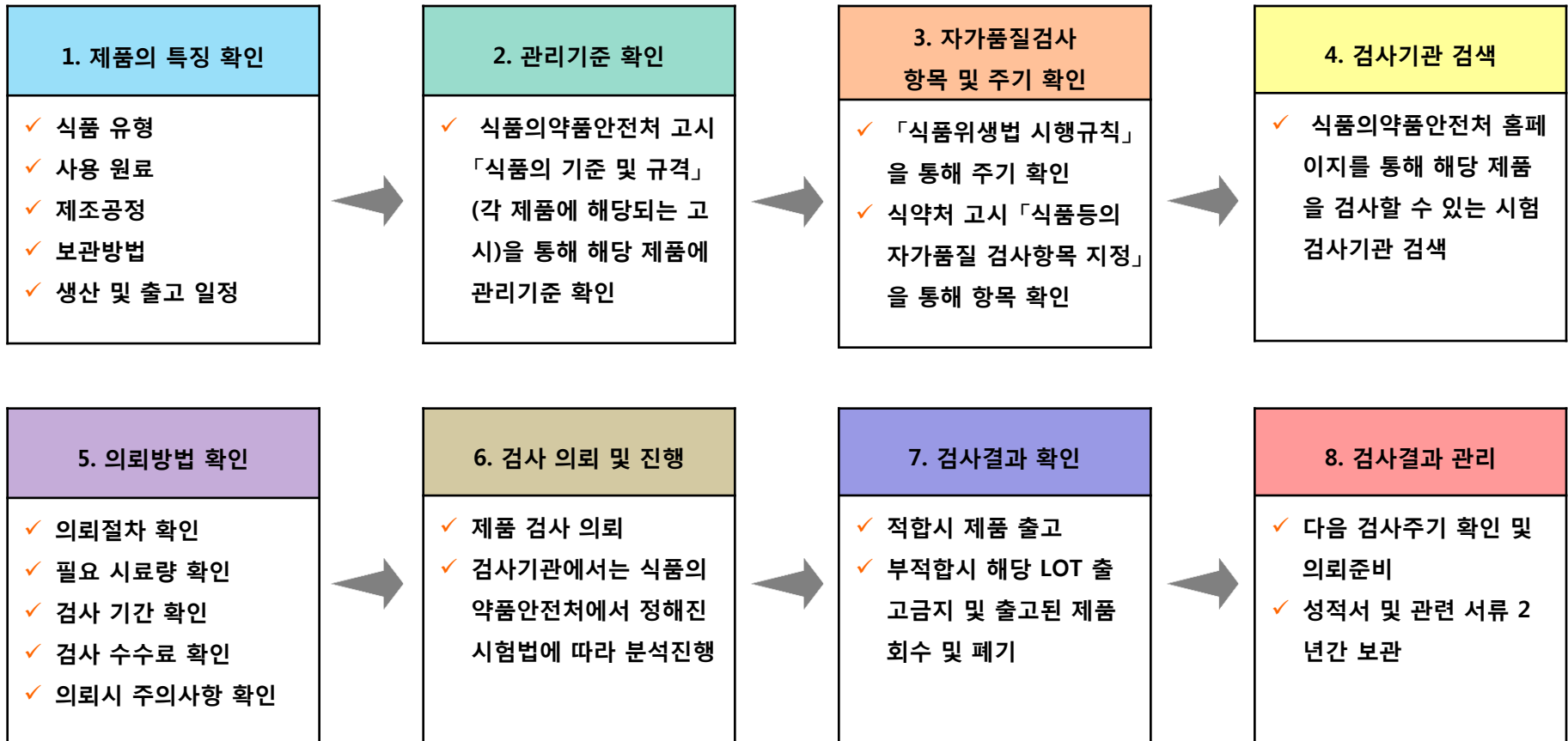
Where?

- ✓ 영업자가 직접 검사가능
- ✓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능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위탁 시험·검사기관
 - 전문 시험·검사기관 14개소,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62개소(2019. 10. 04 기준)
 - 각 시험·검사기관의 **분야 및 시험·검사 항목**을 참고로 의뢰가능한 기관 확인 필요

연번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시험·검사 항목	유효기간
7	제045호	한국에스지에스㈜	이인섭	경기도 의왕시 맑은내길 67, 301호, 302호, 303호, 304호 ☎031-689-8612~17 fax 070-4332-1659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이화학, 미생물,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의 확인검사, 방사능	22.8.6.

II.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II.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1. 제품의 특징 확인
2. 관리기준 확인
3.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확인
4. 검사기관 검색
5. 의뢰방법 확인
6. 검사 의뢰 및 진행
7. 검사결과 확인
8. 검사결과 관리

- ✓ 제품의 품목제조 보고서 & 제품의 표시사항을 통해 제품의 특징 파악 가능
- ✓ 품목제조보고서의 내용과 제품의 표시사항 내용은 동일하여야 함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원	내용량
	기타영·유·식 리포트 식품	유통전문판매원	180 g(160 kcal)
제조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유통기한	조각 하단 표기일까지
보관방법	품목보고번호	장제질(세면)	폴리프로필렌
원재료명	표고버섯(국산), 한우 15.19%(국산:두항생제), 멥쌀(국산:유기농) 11.33%, 애호박 8.75%(국산), 양파 3.51%(국산), 잡쌀(국산) 3.26%, 표고버섯(국산), 대두, 밀, 쇠고기 함유		
제품명	대두, 밀, 쇠고기 함유		

II.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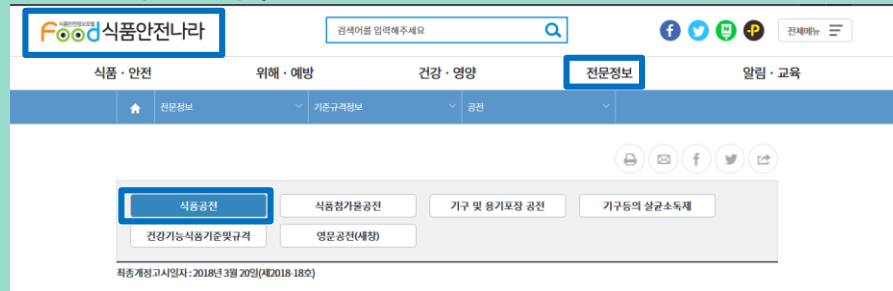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1. 제품의 특징 확인
2. 관리기준 확인
3.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확인
4. 검사기관 검색
5. 의뢰방법 확인
6. 검사 의뢰 및 진행
7. 검사결과 확인
8. 검사결과 관리

- ✓ 파악된 제품특징에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명시된 관리기준 확인
- ✓ 공통기준, 개별기준 등을 확인하며 생산하는 제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계획수립

✓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

- Web site: 식품안전나라 > 전문정보 > 공전



- Mobile: 식품안전나라 App Download > 기준규격
- Download: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색”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검색”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검색”

II.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1. 제품의 특징 확인
2. 관리기준 확인
3.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확인
4. 검사기관 검색
5. 의뢰방법 확인
6. 검사 의뢰 및 진행
7. 검사결과 확인
8. 검사결과 관리

✓ 자가품질검사 항목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지정」 참고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09-47호(2009.07.0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0-55호(2010.07.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1-45호(2011.08.3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1호(2013.04.0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7호(2013.06.1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91호(2013.10.1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호(2014.2.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1호(2014.8.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7호(2016.6.21. 개정).

[별표 11]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중분류	식품유형	검사항목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산기유지방 유체의약품에 한한다. 세균(질분해능)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서, 광학 및 전라투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전지류	항산화제, 세균(질분해능)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서, 광학 및 전라투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발효식품(김모양 등 절리에 한한다). 염기성, 절리에 한한다.

- 장기보존식품의 경우 추가되는 항목 확인

✓ 자가품질검사 주기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 기준” 참고

II.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1. 제품의 특징 확인
2. 관리기준 확인
3.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확인
4. 검사기관 검색
5. 의뢰방법 확인
6. 검사 의뢰 및 진행
7. 검사결과 확인
8. 검사결과 관리

✓ 어디서 검색할 수 있을까?

➢ Web site: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The screenshot shows the KFDA website's 'Policy Information' page. The 'Testing Laboratories' (시험검사기관) link is highlighted with a blue box. Below it, a table lists various testing categories and their details.

➢ 각 검사기관의 분야 및 시험·검사항목 확인

연번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시험·검사 항목	유효기간
7	제045호	한국에스지에스㈜	이인섭	경기도 의왕시 맑은내길 67, 301호, 302호, 303호, 304호 ☎031-689-8612~17 fax 070-4332-1659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이화학, 미생물, 잔류농약, 잔류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의 확인검사, 방사능	22.8.6.

II.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1. 제품의 특징 확인
2. 관리기준 확인
3.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확인
4. 검사기관 검색
5. 의뢰방법 확인
6. 검사 의뢰 및 진행
7. 검사결과 확인
8. 검사결과 관리

- ✓ 각 기관별 의뢰방법 다소 상이하여 SGS 의뢰방법 안내
 - 서류 준비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업등록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품목제조보고서
 - 시료 준비
 - 판매예정인 완제품 상태의 시료
 - 검사항목에 따라 시료량 준비(미생물 n=5 대상 제품, 금속성이물 대상 제품 등)
 - 시료 전달
 - 시료 수신처 확인
 - 시료 보관조건에 따라 포장이송(냉동, 냉장, 상온, 실온 등)
 - 퀵, 택배, 방문, 수거요청 등의 방법으로 시료 전달
 - 접수내역 확인 및 분석료 결제
 - 시료 및 서류가 문제없이 확인시 접수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송부
 - 수신된 접수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확인 후 분석료 입금

II.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1. 제품의 특징 확인

2. 관리기준 확인

3.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확인

4. 검사기관 검색

5. 의뢰방법 확인

6. 검사 의뢰 및 진행

7. 검사결과 확인

8. 검사결과 관리

✓ 의뢰가 되면 검사기관에서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 진행

➢ 접수

- 신청서 - 시료 - 품목제조보고서 - 식약처 전산상의 일치여부 확인
- 도착 시료 이상여부 확인
- 사진 촬영
- 시료 전달

➢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명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진행
- 검사자 결과입력 및 시험책임자 적부판정

➢ 통보

- 검사결과 의뢰처에 송부

➢ 분석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활동

- 분석결과 품질관리를 위한 인원, 시설, 장비 등의 주기적인 관리
- 다양한 QC sample 을 통해 절차상 오류 최소화
- Global 분석기술 know-how 공유 및 내부감사

II.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1. 제품의 특징 확인
2. 관리기준 확인
3.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확인
4. 검사기관 검색
5. 의뢰방법 확인
6. 검사 의뢰 및 진행
7. 검사결과 확인
8. 검사결과 관리

- ✓ 검사기관으로부터 시험통보 받은 검사성적서 확인
- ✓ 부적합인 경우 해당 LOT 생산제품 폐기 및 출고품 회수조치
- ✓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II.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진행 절차

1. 제품의 특징 확인
2. 관리기준 확인
3.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확인
4. 검사기관 검색
5. 의뢰방법 확인
6. 검사 의뢰 및 진행
7. 검사결과 확인
8. 검사결과 관리

-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다음 주기 자가품질검사 의뢰일자 확인 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III. 자주하는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半加工) 원료식품이란?



국내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사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적합하게 국내로 수입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써 배합, 혼합 등의 일부 제조공정을 거친 반가공된 제품을 말함

예시) 생지(밀가루반죽 등)

III. 자주하는 질문



식품을 일정기간 제조하지 않았을 경우 자가품질검사 주기 적용은?



자가품질검사 주기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식품이 일정기간 제조가공되지 않았다면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기간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제품을 재생산하는 시점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적용하면 됨

이런 경우, 생산 및 작업일지와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을 기록 유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동안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빙서류로 보관 제시 하도록 함

III. 자주하는 질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이외 항목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자가품질검사 검사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에서 정한 검사항목만 검사하면 되지만,

동 고시에서 정한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는 식품 등 영업자가 안전한 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식품공전의 검사항목이나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추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III. 자주하는 질문



식품기준.규격에서 타르색소, 보존료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제품제조 가공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타르색소, 보존료를 검사하여야 하는지?



식품 제조 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 할 수 있음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료수불대장 등에서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함

다만, 공무원 등 식품위생감시원이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거나 사용기준을 초과한 타르색소, 보존료 등이 검출될 경우 기준.규격 위반에 해당됨

따라서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제품은 자가품질검사 항목에는 없더라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별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III. 자주하는 질문



판매용이 아닌 증정용, 이벤트 행사용으로 생산한 제품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지?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판매는 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증정용, 이벤트 행사용 제품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III. 자주하는 질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결과를 입력해야 하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하목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영업자가 자체 기록관리시스템을 구비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통합 LIMS(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https://lims.mfd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음

SGS

THANK YOU

